



제조물책임법의 제정방향

제품의 안전성, 품질향상 기여 기대

강창경 /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장

1. 제조물책임의 의의

제조물책임이란 제품의 제조사 등이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제조물책임을 지는 자는 결합제품을 제조한 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의 수입업자, 부품업자, 유통업자도 책임을 진다. 그리고 결함이 있어야 책임을 지는데 결함이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한다. 또한 손해가 발생하여야 책임을 지는데 손해의 범위에는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와 경제적 손해도 포함한다.

제조물책임은 결합제품에 대한 민사책임으로 형벌의 처벌을 받는 형사책임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는 행정상 책임과는 다르다. 외국에는 이러한 제조물책임법이 많은 나라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판례로 이 책임이 확립되었고 일본, 독일, 영국, 필리핀 등 30여개가 넘는 나라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조물책임법 도입을 위해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법률로 제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처럼 판례로 이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앞으로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법률을 제정하게 될 것이다.

1998년 11월 1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제조물책임법제정 실무위원회

회에서 마련한 정부초안인 제조물책임법안을 발표하였고, 이 안은 다소 수정을 거쳐 2천년 경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 법안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 제조물책임법(안)의 내용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하고, 이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따라서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를 본 자는 소비자, 근로자, 주민을 불문하고 모두 이 법에 의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책임원칙을 과실책임에서 결합책임으로 변경하고 있다(제2조). 책임근거규정을 고의 또는 과失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와는 달리 결함을 책임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이 적용되는 제조물의 범위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정하고 있다(제3조). 따라서 공산품인 경우에는 예외 없이 이 법이 적용되게 된다. 농산물도 가공되면 이 법이 적용된다.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의 일부가 된 동산의 결함에 의하여 결함이 올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도 적용대상이 되는 셈이다.

제조물책임을 지는 자로 ① 완성품제조자 ② 원재료 · 부품의 제조사 ③ 제조물에 성명 · 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④ 판매 또는 대여 등의 목적으로 제조물을 수입한 자 ⑤ 제조물의 제조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제조물의 공급자 등을 정하고 있다(제4조).

제조물책임에서 결함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은 책임요건을 정하는 것이므로 중요한 사항이다. 법안에서는 ① 당해 제조물의 성질,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 ②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당해 제조물의 사용 ③ 당해 제조물이 유통된 시기 등을 고려하여 당해 제조물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를 결함으로 정하고 있다(제5조). 이러한 정의는 제조사 입장에서 결함을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통상의 기대수준에서 결함을 판단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연대책임을 규정하여 책임질 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6조).

제조사의 면책의 항변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제조사가 당해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시키지 아니한 사실 ② 당해 제조물의 결함이 정부에서 정한 강제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이 강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는 사실 ③ 제조사가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④ 부품제조자의 경우는 그 부품을 조립한 완성품의 설계가 원인이 되어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또는 완성품 제조사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다(제7조).

이 법안에서는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면하는 특약도 무효로 하고 있다(제8조). 이는 특약에

의한 면책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경제적 약자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안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조사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유통시킨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다만, 이 기간은 신체에 누적되는 경우에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제9조).

4. 결 어

제조물책임제도는 피해자가 배상을 받음에 있어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책임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주어 제품의 결함 예방과 사후 구제에 대비함에 도움을 주는 좋은 제도이다. 그리고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향상시켜 제품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유익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의 판례로 이 제도가 인정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법률이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비가 기업은 물론 정부차원에서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가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제조물책임의 정신은 그 법률이 제정되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우리 사회가 그 정신을 이미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강제에 의한 제품감시를 통하여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기업 스스로 완벽한 안전을 향한 노력을 경주하고 그런 다음에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시대가 왔다는 사실이다. ☐